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상해보험

나. 보험의 종류 :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중도급부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순수보장형 및 만기환급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20년만기	5년납, 10년납, 전기납	만 15세 ~ 5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0년만기	5년납, 10년납, 20년납, 전기납	만 15세 ~ 50세	
60세만기	5년납, 10년납, 20년납, 전기납	만 15세 ~ 40세	
	30년납	만 15세 ~ 30세	
70세만기	5년납, 10년납, 20년납, 60세납, 전기납	만 15세 ~ 50세	
	30년납	만 15세 ~ 40세	
80세만기	5년납, 10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전기납	만 15세 ~ 50세	

나. 중도급부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30년 만기	20년납	만 15세 ~ 5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0세 만기	20년납	만 15세 ~ 35세	
	30년납	만 15세 ~ 25세	
70세 만기	10년납, 60세납	만 15세 ~ 50세	
	20년납	만 15세 ~ 45세	
	30년납	만 15세 ~ 35세	
80세 만기	10년납, 20년납, 60세납, 70세납	만 15세 ~ 50세	
	30년납	만 15세 ~ 45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선납할 때의 할인은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계산하며 할인율은 표준이율로 계산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주계약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주계약 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사항

- 가.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한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없이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고,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이 변경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직업 또는 직무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한다.

라. 직업 및 직무 위험별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		
	고위험	중위험	비위험
위험등급	1,2급	3,4급	비위험등급

14.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 :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1구좌(3,500만원)로 함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